

4차 산업혁명과 한국형 기본소득제 구상 및 단계적 실현방안

- 기본소득 기반 한국형 복지국가 재설계를 위한 아이디어적 수준에서 -

고광용(미래정치센터 연구위원)

1. 4차 산업혁명이 더한 양극화 심화, 사회적 안전망의 위기

□ 4차 산업혁명과 불안정 노동의 양산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계의 노동대체 문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으나 실상 부정적 견해도 있음. 인공지능 등 기술발달의 속도나 과정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에 당장 인간이 해오던 사무관리직 직종이나 전문직종의 기계의 노동대체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영역에서의 노동수요 창출에 의한 일자리도 많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의 노동대체가 우리에게 당장 닥친 현실은 아닐지라도 현 단계 자본주의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보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임. 아울러 양정승(2017)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문제는 불안정 일자리의 증대와 사회 양극화라고 강조한 바 있음
- 이승윤 외(2017)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표준적 고용형태의 확산, 그로 인한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들일 뿐이며, 이 현상에 대한 단순 대응으로서 일자리 창출 전략이나 사회보험 강화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음.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기업들의 지대 독점 문제

- 4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가치 창출 수단은 빅데이터의 생산으로 현 단계 자본주의는 동력에 의한 가치 창출 보다 지식과 정보에 의한 가치 창출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이승윤 외, 2017). 인터넷을 통해 발전된 거대한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공유지에서 놀고 있는 일반 지성들을 통해 가치가 창출되고 있는 것임(강남훈,

2017). 이런 식으로 생산된 지대는 현재 지대 형성에 기여한 일반지성에 분배되기보다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커지게 됨(이승윤 외, 2017)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와 확대, 전통 산업사회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와의 부정합성

- 인지자본주의로의 질적 변화는 노동과 노동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정 노동을 일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산업자본주의와는 다른 가치생산과 분배방식으로의 전환을 보여줌.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정책 영역에도 영향을 끼침
- 전통 산업사회에 구축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와 인지자본주의에서 생산체제의 부정합 현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이승윤 외, 2017)
- 최근의 증가된 일자리는 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낮은 임금'과 '빈번한 고용단절'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일반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채워졌다는 특징을 가짐(이승윤 외, 2017)
- 즉, 일을 하면서도 빈곤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워킹푸어(working poor)만 나타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고용형태들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특수형태 고용은 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플랫폼을 통해 노동·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생산과 소비가 조직되는 주문형 경제에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큼
- 플랫폼 노동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파편화된 불안정 노동의 성격을 갖기에 이러한 경제를 깃 이코노미(gig economy)라 부르기도 함(황덕순 외, 2016). 디지털 플랫폼으로 중개되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크라우드 워크(crowd work)라 하는데, 이 유형의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크라우드 노동자라 부름. 주문형 앱노동자 또한 불안정 노동의 대표주자임(이승윤 외, 2017)

□ 전통 산업사회 사회안정망 및 복지패러다임의 한계와 재검토 필요성

-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자본과 노동의 타협의 산물로 만들었던 전통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안정망인 사회보장제도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에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전통 산업사회 기업과 작업장에 기반 한 노동중심적 사회보장제도(workplace-based selfarism)는 이제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Stiglitz, 2017).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인지자본주의 시기를 맞이하여 전통 산업사회의 복지패러다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이승윤 외, 2017)

2. 기본소득의 이론적 배경(개념과 찬반 논쟁의 시사점)

□ 기본소득의 개념 및 원칙

- 기본소득의 개념은 연구자별로 정의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함
- 현대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설계자인 Van Parijs(2010)는 기본소득을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 현금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라고 정의했음.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Van Parijs의 개념 정의를 토대로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음(강남훈, 2009). 광노완(2007)은 “모든 사회 성원에게 연령별로 균등하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최소생계비”라 정의했음. 박경철(2015)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인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라 보았음. 강남훈(2016)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했음. 김은표(2016)는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았음
- 즉, 기본소득이란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매우 단순한 정책임(이승윤 외, 2017)

<표> 기본소득의 학자별 정의

학자	개념 정의
Van Parijs(2010)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 현금이 무조건 지급되도록 설계된 소득보장제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 되는 소득
광노완(2007)	모든 사회 성원에게 연령별로 균등하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최소생계비
박경철(2015)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생활에 필요한 인정한 소득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
강남훈(2016)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김은표(2016)	자산, 소득, 노동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
이승윤 외(2017)	중앙·지방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아무런 자격·조건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동일하게 제공

- 몇 가지 요소로 기본소득의 개념을 분리해 볼 수 있는 첫째, 지급주체는 국가인 중앙·지방정부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둘째, 수혜자는 모든 개인으로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동시에 가짐. 셋째, 수혜를 위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기에 무조건성이며 역시 보편성의 특징 또한 가짐. 넷째, 지급수준은 일정 수준의 동일한 소득으로 균일성 혹은 동일성의 특징을 가짐

<표> 기본소득의 개념적 접근과 특성

개념 접근 방법		특성
누가(지급주체)	국가(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
누구에게(수혜대상)	모든 국민(구성원) 개개인에게	보편성
얼마나(급여액)	매월 일정액	정기성
무엇을(금액)	현금을	현금
어떻게 주는 가(지급조건)	아무 조건 없이 지급	무조건성

- 기본소득의 특징과 원칙을 열거해보면, 1)보편성(universality), 2)무조건성(unconditionality), 3)개별성(individuality), 4)정기성(regularity), 5)현금기반(cash based), 6)충분성(sufficiency)으로 정리할 수 있음. 강남훈(2015)은 일반적으로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등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기본소득이라 본다고 했음. 반면, 서정희 외(2017)는 개별성보다는 충분성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원칙을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으로 정리하였음
- 보편성 원칙은 기본소득 대상이 시민권에 기초하여 누구나에게 주는 것을 말함. 특히 소득수준이나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임. 이런 측면에서 현금성 사회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무조건성 원칙은 소득(노동)이나 재산(자산 유무 혹은 다소)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을 말함. 기존 노동자와 사업장이 공동기여를 통해 마련되는 (국민)연금이나, 근로장려세제(EITC)·실업급여 등 노동조건이 붙거나 근로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근로연계복지 시스템과는 기본 성격이 다르다 할 수 있음. 김교성(2009)은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사회부조와 구별되기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낙인의 문제도 없다고 주장함
- 충분성 원칙은 개인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실질적인 자유 보장을 위한 충분한 지급을 말함. 이승윤 외(2017)는 ‘충분성’의 수준과 관련하여, 전체 국민의 ‘평균소득의 50%’가 제시되기도 하나, ‘최저생계비’나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수준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 있음.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고시 및 법원 인정(150%) 각각으로 1인 최저생계비를 3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계산해보면, 약 48만원, 72만원 수준임. 보건복지부 고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65만원(649,932원)임

□ 기본소득의 등장배경 및 찬반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불안정 노동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 산업사회의 사업장에서의 노동·근로와 연계한 사회보장 및 사회안전망 체계는 사실상 한계를 맞이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음

- 당초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아래, 2000년대 초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아이디어 수준으로 소개되었음. 점차 불안정 일자리의 증대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2010년 전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성화되었음. 주로 경제학, 여성학, 철학 분야 학자들 중심의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었음(이승윤 외, 2017). 2016년이 되면서, 이재명 시장이 기본소득을 제기하고 성남시에서 실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 전개되었음. 아울러 해외에서도 스위스의 국민투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언론에 관심을 받으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게 됨.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와 함께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갔음(이승윤 외, 2017)
- 특히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확산으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새로운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산되고 있음(서정희 외, 2017)
- 한편, 기존 복지제도를 모두 대체하거나 높은 재정부담, 사회서비스 등의 점진적 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기도 함
- 강남훈 교수, 이승윤 교수 등 한국의 기본소득론자 혹은 학자들은 기본소득과 타 사회보장제도 간 ‘정합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작업의 전제로 ‘어떤’ 기본소득을 추구하는 지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게 표명하고자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의 논리에 대응하고 있음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시사점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목적 및 내용

- 핀란드는 실업수당보다 기본소득을 수령할 때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유인 작용을 하는지 보는 2년간의 국가차원의 기본소득 실험함. 핀란드의 무직·실직자(노동자의 10%) 중 무작위로 선발하여 특별한 수령조건 없이 월 560유로(624달러) 지급하고 추가적 소득활동의 경우에도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함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정당·노동조합, 근로형태별 노동자들의 입장

- 녹색당과 극좌파 정당, 복지국가 축소를 희망하는 보수주의자들 중 (경제적) 자유주의론자들이 기본소득 실험을 찬성함. 반면, 기본소득 회의론자들은 전통 보수당, 사회민주주의자, 대규모 노동조합들임
- 근로형태별 노동자들의 입장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이 다름. 중공업의 정규직(상근) 직장을 가진 조합원들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들은 실업기금 운영의 통제력 상실을 원하지 않기에 기본소득을 반대함. 반면, (대부분 여성인) 청소노동자(cleaner)들이나 소매업 노동자(retail worker)들과 같은 시간제(파트타임) 서비스 직원들을 대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을 찬성함

○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시사점

- 기본소득 실험의 찬성파에 좌파 정당과 경제적 자유주의의 보수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파에는 전통적 우파 정당과, 사회민주주의자/조직노조로,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왜 전통적 복지국가론자들과 조직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지를 설명해줌. 또한 시간제 알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좌파 정당이 기본소득을 찬성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바탕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조직노조의 대변자이자 동시에 비정규직/시간제(알바) (청년)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의당의 기본소득 입장은 보다 복합적이고 정교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 급진적 방식 혹은 경제적 보수우파 논리에 가까운 현행 복지체계를 무너뜨리고 전면적(완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당이 구상하는 복지국가와는 전혀 다르기에 적절하지 않음. 철학적 맥락은 다르나 사민주의·복지국가론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현금수당 확대와 부분적 기본소득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동의되는 지점에서 한국형 부분적 기본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 방향임
- 즉, 아동,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시작하여 장애인, 농민, 청년 등 사회취약 계층이나 집단으로 수혜범위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는 유지 및 확대하되, 기존의 선택적 현금수당을 정리하고, 점차 10~30만원 수준의 보편적 현금수당으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향후 세원확보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해나가면서 수혜대상을 국민 전체로 점진적 확대해나가야 함. 기본소득(수당이나 급여) 수준 또한 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면서 소득보장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정의당이 향후 기본소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로 보임

3. 한국형 기본소득제 구상 및 단계적 실현방안

□ 기본소득제의 구상과 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성¹⁾

○ 기본소득제 구상: 기본소득의 수준 제안과 의미

- 한국형 기본소득은 최종적인 완전 기본소득(안)은 모든 개인에게 매달 현금 50만 원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임
- 산출근거는 2017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중위소득의 30%)에 기초하며, 기본소득 수준은 매년 중위소득에 연동하여 조절될 수 있음. 제도가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중위소득의 50% 이상 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1) 본 기본소득제 안은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 간담회에서 이화여대 이승윤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재정리된 것임. 이 안은 서정희 외(2017)의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방안' 내용과도 부합됨.

- 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 수준인 완전 기본소득의 수준은 50만원이며 2016년 최저생계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인 약 48만원과 유사한 수준임
- 1.1~1.2명대의 저출산율로 볼 때, 자녀가 하나 있는 가구당 평균 3명의 가족구성원이 있는 것으로 보면, 3인 가구의 1인 기준 최저생계비 액수와 유사한 기본소득 50만원의 액수는 비교적 적정수준에 있다고 판단됨
- 완전 기본소득 제공 시 급여대상 선정을 위한 자격심사 절차가 불필요해지므로 다양한 사회부조의 고질적인 사각지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가능해짐. 시민권에 기초하여 모든 개인에 제공되기에 급여 수급으로 인한 낙인과 의존성 문제도 극복할 수 있음

○ 기본소득 기반 한국형 복지국가의 재구성: 사회복지 유형별 유지·확대·변화의 방식과 내용

- 한국형 기본소득 기반 복지국가를 구상해본다면 현금성 사회부조(현금수당) 방식의 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연금과 실업급여는 내용상 일부 조정, 교육이나 보육, 의료(건강보험 포함),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서비스는 현행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확충해나가는 것임
- 완전 기본소득 도입 시 국민연금은 급여산출식에서 균등화 역할은 필요없게 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수준을 유지함. 2016년에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조정하자는 제안보다 전체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음
- 고용보험의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완전 기본소득 도입 시 실업급여의 하한액 문제는 해결이 가능함. 다만, 상한선에 대한 상향조정을 거쳐 실질소득대체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으며, 중기적 차원에서 소정 급여일수에 대한 단계적 확대 또한 요구됨
- 건강보험의 경우, 서비스 중심의 급여가 제공되는 영역으로 완전 기본소득이 제공되어도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됨. 그러나 향후에 '보장성'과 '공공성' 확대 노력이 요구되며, 사각지대 개선에 더욱더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 모든 개인과 가구에 현재 지급되는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제공이 보장된다면 대표적인 현금성 사회부조인 생계급여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해야 함. 생계급여 수준 대비 기본소득의 합산액 비중은 1인 가구의 100.83%에서 7인 가구 167.94%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임
- 현금성 급여인 수당의 경우 일부 수당적 분배를 원리를 적용 중인 '기초연금'과 수당이라는 명칭만 쓰고 있는 '장애수당'과 '한부모수당'은 현금성 소득보장 체계에 포괄되므로, 완전 기본소득에 통합 운영될 필요가 있음. 다만, 장애인 등 추가 비용을 충당키 위해서는 개별적인 수당제도 마련과 사회서비스의 대폭적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현행 장애인 복지기관에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은 대폭 축소 및 삭제하고 그것을 장애수당으로 전환하면 추가적인 재원소요가 줄어들 것임

- 사회서비스의 경우 여전히 부족했기에 대폭적 확장이 요구됨. 완전 기본소득은 기본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현금급여로 사회서비스와는 별개이며 시장 실패가 전제되어 시장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없는 공공재 구입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유럽의 보수주의 정치가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련의 사회서비스까지 현금급여로 대체하자는 것은 아님. 기본소득 수준 또한 유럽에서 논의되는 수준보다 훨씬 모자라는 수준임. 이 기본소득(안)은 기존 사회복지체계 자체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아니기 때문임
- 교육서비스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유지 및 운영함.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교까지 확장하고, 대학교육 또한 무상 제공, 일반적인 직업훈련까지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 맡음
- 아동양육 관련 서비스는 2가지 방안이 있는 첫째, 현재의 보육료 지원을 폐지하고 양육수당을 통합하여 기본소득으로 바꾸는 방안임. 둘째, 현금급여 방식의 양육수당은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시설 이용 아동의 양육 관련 보육서비스는 유지 혹은 확대하는 안임
- 출산휴가 및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의 정책은 유지하고, 재원을 고용보험이 아닌 조세에서 충당해야 함

<표> 완전 기본소득 복지국가 설계 시 사회복지 유형별 변화(안)

사회복지 유형	변경방식	변화내용
국민연금	현행 유지	급여산출식에서 균등화 기능 삭제
고용보험	일부 조정	상한선 상향조정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 소정 급여 일수 단계적 확대
건강보험	현행 유지	보장성·공공성 점차 확대, 사각지대 문제 적극 개선
생계급여	폐지	현금형 사회부조인 생계급여 폐지
수당	일부 조정	장애인 위한 추가비용 총당 개별적 수당 마련 및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전제 장애수당 및 한부모수당 등은 완전 기본소득에 통합운영
사회서비스	대폭 확장	교육서비스: 무상급식 전국 단위 확대 유지·운영, 의무교육 고교까지 확대, 대학교육 무상 제공, 일반직업훈련까지 정부 책임 보육/유아교육(2가지 안): 1)보육료 지원 폐지 및 양육수당 통합 기본소득 대치, 2)양육수당의 기본소득 통합 및 시설 이용 아동 양육 관련 보육서비스 유지/확대
출산휴가/육아휴직	현행 유지	재원을 고용보험 기금 보다 조세에서 충당

자료: 서정희 외(2017); 이승윤 외(2017).

<그림> 한국형 기본소득 바탕 복지국가 모형 설계도



□ 기본소득 바탕 한국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이행경로

○ 피츠패트릭(Fitzpatrick)의 제안과 단계적·점진적 이행의 필요성

- Fitzpatrick(1999)은 완전 기본소득의 실현 경로를 총 5가지 단계로 정리하여 제안함. 1)현 사회보장 체계 개선, 2)과도적 기본소득 실행, 3)참가소득, 4)부분 기본소득 점진적 도입, 5)완전 기본소득으로 발전
- 단기간에 도입하여 빠르게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한 상황임. 또한 유럽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들은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체계를 현금수당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하고 있음. 사회복지학계에서도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논리와 입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임
- 제도의 완결성·효과성, 타 제도와 정합성·상보성 차원에서 혼란 초래 가능성 존재. 그러므로 충분한 논의 및 사회민주주의 지향 정당 및 노동조합들의 반대를 찬성으로 돌리기 위한 세심한 준비와 제도적 완결성을 제고하는 등 당장의 도입 보다는 정당과 노조, 시민사회단체 및 여론의 지지를 확보해나가며 점진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완전 기본소득형 복지국가 달성을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의 방향

- 우선 노동자 중심 폐쇄적 시민권에 대한 확장을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을 시작으로 점차 청년층까지 포괄하는 인구집단별 ‘사회수당’ 혹은 과도적 형태의 기본소득을 제도화 함. 점차 건강한 노동가능 연령대를 위한 수당자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요구됨(이승윤 외, 2017)

- 현실가능 한 수준의 단계적 이행경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²⁾

·1단계 기존 사회보장체계 정비 및 사회서비스 확충

- 1)현 사회보장 체계 합리적 조정 및 사회서비스 확충
- 2)실업부조 및 새로운 범주형 사회부조 도입과 기초생보의 생계급여 확대

·2단계 과도적 기본소득(사회수당 개념 도입 및 점차 확대)

- 3)취약계층 중심 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사회수당 구축
- 4)참여소득 형태 농민(농촌형) 기본소득과 광역별(국비·지방(시도·시군구)비 매칭) 청년수당·배당) 도입

·3단계 완전 기본소득화(사회수당체계 통합 및 국민전체 확대)

- 6)인구집단(아동·노인)별 수당의 연령 확대(예, 아동(만0~5세)에서 청소년(1차 만 12세, 2차 만18세)으로 점차 확대)
- 7)국가 청년(만19세~만24세) 기본소득(청년수당/청년배당) 도입
- 8)각종 사회수당 통합

·4단계 완전 기본소득 달성

- 9)약 30만원 수준 전환적 기본소득 운영
- 10)기본수준 상향 조정 및 완전 기본소득 완성(약 50만원)

- 즉, 처음에는 기존 사회보장 체계를 정비하고, 다음으로 사회수당 개념을 취약계층 및 농민과 청년 등 근로가능 연령이지만, 상대적 약자층으로 전략해가는 집단에 참여(소득)형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과도적 기본소득을 마련하고, 기존 사회수당 통합 및 수혜집단을 국민전체로 확대하여 3단계 완전 기본소득화, 마지막으로 4단계 완전 기본소득 달성을 위해 1차로 30만원 수준으로 전환적 기본소득을 운영하고 2차로 기본소득 수준을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노동시장, 교육 등 다양한 제도와의 정합성·상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동시에 어느 정도 수준의 보편성과 충분성, 무조건성을 가진 기본소득이 고려되느냐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이산 등의 수준도 상호보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돌봄, 장애인, 건강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한 동시적인 확대 및 발전이 요구됨(서정희 외, 2017; 이승윤 외, 2017)

2) 서정희 외(2017)·이승윤 외(2017)의 안을 수정보완 하고, 4단계로 범주화하였음.

참고문헌

- 강남훈(2016), 기본소득 가능성 검토,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 6차 월례포럼 발표자료.
----- (2017), 인공지능과 보편기본소득의 권리, Plenary Session 3 Basic Income and Human Emancipation, The 16th BIEN Congress.
- 곽노완(2007), 기본소득과 사회연대소득의 경제철학 -빠레이스, 네그리, 베르너에 대한 비판과 변형-, 시대와 철학 제18권 2호: 183~218.
- 김교성(2009),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 김기선(2017),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 토론자료집.
- 김은표(2016),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8호.
- 김진하(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 KISTEP R&D InI 15호.
- 박경철(2016),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과 방법, 충남논단 2016 여름: 37~44.
- 박지순(2017),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 토론자료집.
- 서정희·김교성·백승호·이승윤(2017), 한국형 기본소득의 '이상적' 모형과 '단계적 이행 방안, 2017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승윤(2016),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한국 불안정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부정합, 미래정치센터 간담회 발표자료.
- 이승윤(2017), 4차 산업혁명과 복지국가의 재구성, 미래정치센터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마련 5차 간담회 자료집.
- 황덕순(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Stiglitz. Joseph. E(2017), The Great Divide -Unequal Societies and What We Can Do about Them, W. W. Norton & Company.
- Tony Fitzpatrick(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St. Martin's Press.